

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(제6조 관련)

1. 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.

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의 금액 = (기준 수익액 - 현실 수익액) × 어선별
지원계수 × 조정계수 × 3년

2. 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을 산정할 때 각 요소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기준 수익액: 어업 종류가 통합·변경되거나 어구의 사용량·규모가 조정
되기 전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의 어선 1척당 연도별 평균 수익액 중 최고치
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익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최근 5년간의 자
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수익액으로 산정한다.

나. 현실 수익액: 어업 종류가 통합·변경되거나 어구의 사용량·규모가 조정
된 이후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의 어선 1척당 연도별 평균 수익액 중 최고치
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익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최근 5년간의 자
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수익액으로 산정한다.

다. 어선별 지원계수: 해당 업종의 평균 어선톤수, 어선 1척당 평균 어획량을
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한 수치로 한다.

어선별 지원계수 = (대상 어선의 톤수 ÷ 해당 업종의 평균 어선톤수) ×
(대상 어선의 평균 어획량 ÷ 해당 업종의 평균 어획량)

라. 조정계수: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3.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어업 종류가 통합·변경되거나 어구의 사용량
· 규모가 조정되기 전에 어업을 경영하던 어업자로서, 현실 수익액이 기준 수
익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어업자로 한정한다.

4. 어선별로 산정한 경영개선지원금의 실제 지원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
으로 하되, 1천원 미만의 금액은 1천원으로 한다.

5. 기준 수익액 및 현실 수익액의 산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
산부장관이 정한다.